

제주지방법원 2022. 8. 19 선고 2020가단6448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주영, 이정언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

변 론 종 결 2022. 5. 13.

판 결 선 고 2022. 8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8,165,2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C은 제주시 D에서 운영하던 'E 식당'(이하 '이 사건 음식점'이라고 한다)을 운영하면서 F이라는 상호로 활어류 등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생선류를 납품받았고, 그 대금 중 4,70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.

○ 원고는 C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차1377호로「C은 원고에게 4,70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7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」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○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2020. 8. 21.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가. 주위적으로,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후 양도인인 C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42조 1항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.

나. 예비적으로, C과 그의 어머니 G, 피고는 공모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그 수입금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3. 판단

갑1부터 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C 등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을1부터 8호증의 각 기재,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G는 C의 어머니로 C에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1억 3,500만 원을 빌린 사실, 피고는 G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20. 7. 21.경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

음식점의 명의를 넘겨받고 피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매출금을 입금받은 뒤 그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30만 원씩을 피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받는 형식으로 변제받기로 한 사실, 이를 위하여 G가 피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비용이 모자랄 경우 피고로부터 다시 돈을 입금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.

판사 송현경